



공유경제와 보험수요¹⁾

최예린 연구원

공유경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또는 재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뜻하는데,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어비엔비, 우버, 레모네이드 등이 있음. 공유경제 참여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, 공유 플랫폼 제공자, 서비스나 부동산 제공자, 소비자가 있음. 공유경제에서는 참여자가 다양해지면서 참여자 간 신뢰, 안전, 손실, 보안 등 새로운 위험이 등장함. 로이드(Lloyd's)는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끄는데 보험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. 공유경제는 보험을 통해 고객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- 서비스 또는 재산을 공유하는 공유경제(Sharing Economy)는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
 - 로이드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개인들로 하여금 서비스 또는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을 공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시스템임
 - 유희공간 또는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을 방지하여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장점임
- 공유경제 참여주체는 공유플랫폼 제공자, 서비스 또는 재산 제공자, 그리고 소비자로, 이들 참여주체가 직면하는 위험은 전통적인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임
 - 공유플랫폼 제공자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규제이며 사이버위험 등과 같은 위험도 존재함
 - 캘리포니아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(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)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회사인 우버(Uber), 리프트(Lyft)등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 “공공책임보험과 재물손괴보험 없이 운송사업 영위” 및 “종업원 상해보험 없이 운전자 고용”에 대해 약 2만 달러의 벌

1) Lloyd's(2018. 4. 9), “Sharing Risks, Sharing Rewards: Who Should Bear the Risk in the Sharing Economy?”

금을 부과함²⁾

- 서비스 또는 재산의 제공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도난, 손괴 및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허술한 계약, 고객에 대한 잠재적 책임 등이 있음
- 공유경제 소비자에게는 개인의 안전, 이용시설 유지 및 보수에 대한 보장 부족, 사고 발생 시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수준의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새로운 위험임
- 공유경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공유플랫폼 이용자 간 신뢰와 회사의 평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이 공유경제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

■ 로이드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이 공유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

- 로이드는 미국(2,000명), 영국(1,000명), 중국(2,000명)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
-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이며 간편하고 유희시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등 공유경제의 이점보다 이용자의 안전, 서비스품질, 이용시설의 손괴, 도난 및 보호조치 미흡 등과 같은 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함
 - 그러나 이 중 약 70%는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제공된다면, 공유경제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함
- 반면 누가 보험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회사와 공유플랫폼 이용자 간 이견이 있음
 - 다수의 공유경제 회사는 이용자를 위한 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응답함
 - 한편 소비자는 공유경제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서비스 또는 재산의 제공자, 마지막으로 소비자라는 응답이 있었음

■ 공유경제에 내재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경우 공유경제의 발전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**kiri**

2) JD Supra(2013. 11. 8), "Collaborative Consumption - Is It Good to Share?"